

<최종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2012. 12.

<연구팀>

작성	(사)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책임자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공동연구원	김용민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부교수)
	오수용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요 약>

본 보고서는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현황과 사상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우’회의의 변천과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전개 및 과제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 III장에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슈를 검토해 본다. ‘리우+20’ 회의의 분야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세부 내용과 그 시사점, 또한 ‘리우+20’ 회의의 성과와 과제 등을 알아본다. IV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과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등은 논의해 본다. V장에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대책에 관해서 알아본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 ODA, 더불어 ‘원조의 녹색화’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지적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VI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된 함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탐색해 본다.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의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리우+20’ 회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논의 현황 파악과 한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 ‘리우+20’회의와 ‘녹색성장’의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녹색성장’ 비전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향후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 ODA’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I. 서론	1
II.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현황과 사상	4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목표	4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우회의’의 변천	8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과정과 과제	11
III.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2012 ‘리우+20’ 회의	61
1. ‘리우+20’ 회의의 분야별 행동 계획	61
2. ‘리우+20’ 회의의 내용과 시사점	8
3. ‘리우+20’ 회의의 성과와 과제	8
IV.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28
1.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	28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호성	31
3. 한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니셔티브	4
4. 생태주의와 생태근대화	36
5.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40
6. 녹색생활의 실천	43
V.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대책	46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46
2. 한국의 ‘녹색성장’	49
3. 한국의 녹색 ODA	53
4. ‘원조의 녹색화’	56
5. 향후 과제 및 정책적 함의	59
VI. 결론	62
참고문헌	63
부록1. 유엔인간환경선언	67

부록2. 나이로비 선언	72
부록3.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74
부록4.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78

I.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부룬트란트(Brundtland) 위원회가 1987년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 환경보존, 사회발전을 모두 균형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2005년 세계 정상회의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증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기둥(three-pillar approach)로서 경제성장,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92년 리오에서 개최된 UN 환경 및 개발 회의에서 21세기를 위한 글로벌 행동프로그램인 ‘아젠다 21’의 핵심 개념이 되었고, ‘아젠다 21’에 서명한 170여 개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오 회의 이후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리우+10’ 회의와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20’ 회의를 통해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책의 지향점, 행동 원칙, 그리고 국제 규범으로서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특히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있었던 ‘리우+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 경제(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해 모두 26개에 분야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수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인 합의라고 칭하고, 이러한 노력은 도착이 아니라 출발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리우+20’ 회의 폐막식에서 발표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최종 성명에 대해, 최종 성명이 우리의 미래 꿈을 건설할 수 있는 비전을 담았다면서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사회·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리우+20’ 회의 폐막식에서 발표된 최종 성명이 더 과감한 이행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리우+20’ 회의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NGO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중정상회의’는 ‘리우+20’ 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과 행동, 자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쉼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저개발국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녹색 경제’를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에 부과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으며,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부유한 국가들이 환경 자산을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지구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은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에서 당면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대신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 및 자원과 경제성장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뜻하며, 기왕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저개발국에 필요한 경제성장의 요소를 보다 강조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선순환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제시되었다.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는 이런 용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녹색성장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후 한국은 2008년에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전세계에 주도적으로 ‘녹색성장’ 비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현황과 사상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우’회의의 변천과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전개 및 과제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 III장에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슈를 검토해 본다. ‘리우+20’ 회의의 분야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세부 내용과 그 시사점, 또한 ‘리우+20’ 회의의 성과와 과제 등을 알아본다. IV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과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등은 논의해 본다. V장에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대책에 관해서 알아본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 ODA, 더불어 ‘원조의 녹색화’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지적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VI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된 함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탐색해 본다.

II.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현황과 사상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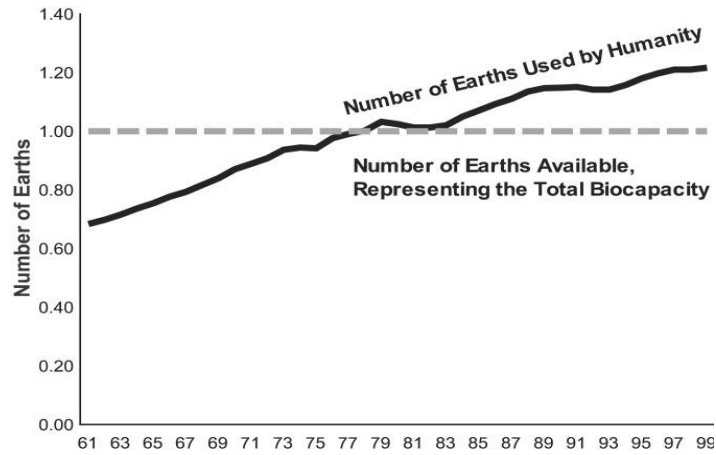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이를 줄여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함)’의 의미는 1972년 로마클럽이¹⁾ 발간한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평형성(equilibrium)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은 현재의 성장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림1>이 보여주듯이, 지구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환경적 재앙과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구의 인구-경제-환경 삼자가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장의 한계』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환경오염 사건들과 함께 국제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장의 한계』가 국제사회에 미친 반향에도 불구하고,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선언(이하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생태학적인 불균형”(제3조)을, 1982년 나이로비 유엔인간환경선언(이하 나이로비 선언)에서는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언급하고 있을 뿐, 평형성이란 용어와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이라는 의미는 부각되지 않았다.²⁾

1) 로마클럽은 1968년 4월 로마에서 결성된, 서유럽의 경제·재계·학계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미래연구기관으로, 인간·자원·환경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단체이다.

2) 『성장의 한계』가 사용한 컴퓨터 모형의 가상시나리오는 지구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200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물질적 생활수준이 2015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1972년의 수준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이런 분석결과가 1972, 198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간주하지 않게 만든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은 1992년에 출간한 『성장의 한계, 그 후 20년』에서는 지구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수용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결론지었다(도넬라 H. 메도즈·테니스L. 메도즈·요르겐 랜더스 2012, 12-17).

<그림1> 지구의 수용한계³⁾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에 따르면,⁴⁾ 1987년 UN특별위원회,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 이하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⁵⁾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자원의 개발, 투자의 방향, 기술개발의 지향점 그리고 제도의 개선 등이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의 필요도 함께 반영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일은 발전과정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89).

3) <http://www.pnas.org/content/99/14/9266.full.pdf+html> (검색일 2012년 11월 5일)

4)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은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지속가능성에 준하는 개념으로 평형성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도넬라 H. 메도즈·데니스L. 메도즈·요르겐 랜더스 2012, 449).

5) 당시 WCED의 위원장을 노르웨이 사민당 당수였던 브룬트란트(Gro Nerlem Brundtland)가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WCED를 브룬트란트위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 미래”를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부른다.

동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환경과 발전정책의 중요 목표로서 다음과 같이 7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⁶⁾

첫째, 성장을 소생시킬 것. 성장의 소생은 주로 빈곤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곤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빈곤은 대개 개발도상국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따라서 성장의 소생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빈곤 완화 그리고 환경생태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과 이에 필요한 국제경제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성장의 질을 변화시킬 것. 성장의 질적 변화는 산업, 농업, 교육, 보건 등 경제와 사회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서 빈곤의 완화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공정하게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경제발전에 있어서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 공동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 식료품, 에너지, 물, 위생설비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것. 필수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 핵심적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국민들의 점증하는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속도와 유형을 조정하고 빈곤한 가구들이 최소한의 소비수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의 적절한 소비, 주택·수도공급·위생설비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구 수준을 유지할 것.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구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태계의 생산능력과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화시킬 것이 요청된다. 특히 지구의 인구증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국민들의 생계기반의 확충과 같은 경제계획이나 사회발전계획과 통합된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6) 7개의 중요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계환경발전위원회(2005, 96-117)를 참조할 것.

다섯째, 자원기반을 보존하고 사용효율을 높일 것. 증가하는 인구와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토지, 표토층, 어족, 삼림자원, 지하자원 등의 자연자원의 연간 고갈량을 재생률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비료나 해충을 막기 위한 비화학적 수단의 사용 확대 뿐 아니라 물과 농화학물의 엄격한 통제 등과 같은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화석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비화석 자원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발전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여섯째, 기술과 위험관리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 앞에서 언급한 모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혁신능력이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향상되어야 하며, 환경적 요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의 방향 설정과 개발은 핵발전소, 사고예방과 대비계획 등과 같이 위험관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경제적 고려와 생태적 우려는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선진공업국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대한 요구 또한 서로 조응할 수 있다. 개발정책에 환경영향에 대한 공개조사, 공청회, 주민투표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와 법은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지속가능한 7개의 발전전략이 “인간간의, 그리고 인류와 자연간의 조화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국내적-국제적 정치기구나 경제기구가 1980년대의 발전과 환경의 위기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117-118).

- 첫째,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치체제
- 둘째,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
- 셋째, 부조화스러운 발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
- 넷째,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는 생산체제
- 다섯째,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술체제
- 여섯째,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흐름을 촉진시키는 국제체제
- 일곱째,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세계환경발전위원회는 1987년 2월 27일에 도쿄에서 열린 회의(이하 도쿄회의)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반영한 도쿄선언을 발표하였다. 도쿄선언은 모든 회원국들이 채택해야 할 국가정책 활동의 8개의 지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장의 회복, 둘째, 성장의 질적 변화, 셋째, 자원기반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일 것, 넷째, 인구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다섯째, 기술의 사용방향을 재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할 것, 여섯째, 정책결정과 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일곱째, 국제경제 관계의 개혁, 여덟째, 국제협력의 강화이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530-534). 즉 도쿄선언은 2000년 이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국가정책과 국제협력의 우선적 목표와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우회의’의 변천

『성장의 한계』가 발간된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이하

스톡홀름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⁷⁾ 이 선언은 전문에 해당하는 7개조의 선언과 행동목표에 해당하는 26개의 원칙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주된 관심은 발전이 아니라 인간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톡홀름 선언에서 제시한 7개조의 선언은 15년 후의 도쿄선언과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7개의 중요 목표의 전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7개조는 물질적인 생계수단의 제공(제1조), 환경의 보호와 개선(제2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발전의 혜택의 공유(제3조),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개발(제4조), 인구 증가(제5조),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목표(제6조), 미래세계의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촉구(제7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선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합의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6개의 원칙은 대체로 자연생태계, 천연자원, 지구의 재생능력, 야생동물, 오염물질의 방출, 해양과 해양생물자원, 경제사회발전, 개발도상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제기구와 국가의 노력, 접근시각의 변화와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 과학과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권의 인정, 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제법의 발전, 국가주권의 보호와 적절한 다자간 협력의 구축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것이다.

스톡홀름 선언 후 10년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2년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이하 나이로비 회의)가 개최되었고, 나이로비 선언⁹⁾이 채택되었다. 나이로비 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에서 제시한 행동목표가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 선언이다. 이러한 반성은 1983년 12월 세계환경발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고, UN사무총장은

7)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97&A...>

8) 선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1>을 참조

9) 나이로비 선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를 참조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요청하였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19-20).

첫째, 2000년 이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적인 환경전략을 제안할 것.

둘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개발도상국들 간의 그리고 경제와 사회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나라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원 그리고 환경과 발전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호혜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할 것.

셋째, 국제공동체가 환경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것.

넷째, 장기적인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보호와 개선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개될 장기적인 활동의 의제와 세계 공동체가 열망하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

세계환경발전위원회의 활동은 1987년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하였으며, 도쿄선언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쿄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 활동의 원리를 천명하는 데에 그치고 실질적인 행동계획이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지 5년이 지난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이하 리우회의)가 개최되었다.¹⁰⁾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1992년 6월 14일)은 원칙 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하고 있으며,¹¹⁾ 21세기의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의제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을 시작으

10) 178개국에서 24,000여명(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대표 100여명 참가)이 모인 UNCED는 당시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으며,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각국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전략인 Agenda 21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11) 원칙 1 “인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에 대한 자격을 지닌다.” 리우선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3>을 참조.

로 각 참가국들은 Agenda 21을 추진할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를 설립하고 환경과 개발, 그리고 사회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¹²⁾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국에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의제21과 의제21 추가 이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¹³⁾ 각국의 정상들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8조에서 1972년 스톡홀름 회의, 1982년 나이로비 회의, 1987년 도쿄회의, 1992년 리우회의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로 이어지는 노력의 역사를 환기시키고, 리우회의의 “환경보호와 사회적·경제적 개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201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이하 리우+20)는 20년 전 리우회의에서 선언한 의제 21 및 이행계획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로서 지구환경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한 회의였다. 리우+20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살펴본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과정과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소위 환경보전주의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론자들은 산업사회에서 구축된 발전에 대한 믿음과 이를 토대로 한 희망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972년의 『성장의 한계』는 지속되던 산업화의 이데올로기에 반산업

12) 한국은 1996년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여, 2000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시켰다.

13)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4>을 참조.

주의적 관념을 만들어냈으며, 환경보전주의를 태동시켰다. 『성장의 한계』는 많은 학계, 저널리스트, 사업가, 정치인들로부터 때로는 비판의 형태로, 때로는 기술과 발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김판석·사득환 1998, 72-75).

『성장의 한계』가 촉발시킨 환경에 관심은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사건이 빈발함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유조선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체르노빌의 핵누출사고, 북유럽과 캐나다의 산성비, 아마존 유역의 삼림황폐화 등은 환경문제를 전 세계인의 관심사로 확대시켰다. 특히 1974년 불화염화탄소류(CFCs 화합물)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론이 정립되고 1세기이상 방출이 계속되어 대기권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정치가는 물론 일반대중들에게 까지 확산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¹⁴⁾ 『성장의 한계』에 이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는 많은 견해들을 탄생시켰다. 첫째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근대화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생태적으로 계몽하고 이성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의 견해가 있다(이태화 2012). 이 입장에서 자연은 자원의 원천이자 오염원의 재활용자로서 인식되며, 새로운 기술혁신과보다 적은 에너지와 물질의 사용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중심의 공급위주의 환경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윈윈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급진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으로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사회생태주의(Social

14) 1987년에서 1992년 사이에 있었던 각종 환경에 관련된 회의에서 영국의 대처 수상,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미국의 부시 대통령 등은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천정웅 1995, 35-40).

Ecology)를 들 수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와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생태여성주의와 사회생태주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사회적 형평성, 억압구조, 계급구조의 문제에서 환경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견해들은 생태적 근대화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견해이건 간에 환경을 보전해야 하며 국제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표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논의들		
	『우리 공동의 미래』	생태적 근대화	급진적 논의들
자연/환경	인간과 밀접한 관계	자원의 원천	자연과 인간의 평등한 관계
성장의 한계성	한계성에 대한 모호한 접근	한계는 거부되기 보다는 목살	한계성 인정
정부	정부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식함	관리 및 조정의 역할	중앙집중적인 권력의 분권화 강조
시장체제	별로 강조 안함	유용성 인정	비판적
협력관계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협력관계 중요시	파트너십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중요시
해당영역	지역에서 국제적 차원	지역 및 국가차원	지역에 많은 관심
국제협력	중요	고려하지 않음	중요
기술	중요	매우 중요(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 중요)	적정기술 강조
사회적 형평성	중요	고려하지 않음	중요

* 이태화(2012), <표2> 참조.

스톡홀름 회의에서 리우+20에 이르는 약 40년간의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와 같은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처럼, 국가들 간에도 공감대와 입장차이가 동시에 드러났다.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공동의 관심사가 된 것은 사실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은 입장의 차이는 극명했다. 대부분 환경론자의 입장인 선진공업국과 경제발전론의 입장을 지

지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은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국제기구의 구성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와 1982년 나이로비 회의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들이 촉구하는 사항들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을 절충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이었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양 진영의 국가에서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1992년 리우회의의 중심테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천정웅 1995, 37).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거의 전 영역에서 환영할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개념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지닌 자연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인간사회의 성장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관념이라는 점이다. 자연과 인간사회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같은 체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닫힌 체계를 단순재생산 체계로, 열린 체계를 확대재생산의 체계로 이해할 때, 자연과 인간사회가 모두 닫힌 체계이거나 열린 체계여야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은 단순재생산의 닫힌 체계이나, 인간사회는 확대재생산을 하는 열린 체계이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홍균 2000, 812-813). 실제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발전이 환경과 인간사회에 대해 가지는 자기파괴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고, 또 현재 지구환경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선진공업국의 성장이 원인이라 주장도 부인하기 어렵다. 개념적 차원에서 인간 사회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연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이다.

둘째로, 실현가능성 차원의 문제점이다. 소위 ‘동서문제’로 불리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환경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소위 ‘남북문제’로 불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의 재분배차원에서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그림1>에서 보듯이,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은 현재 인류는 지구의 수용한계를 약 20%정도 초과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2005, 19). 이는 더 이상 성장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나라들은 오히려 인간 사회의 규모와 자원의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빈곤한 국가들에게 있어 성장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수용한계를 유지하거나 축소 시킴으로써 자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진공업국의 경우 현재 상태의 유지 혹은 감축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저속 성장 혹은 선진공업국이 감축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성장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은 단기적으로 선진공업국의 저성장 혹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공업국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따른 의존의 심화,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계속으로 인해 선진공업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업국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와도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경제-인구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얼마나 고려할 수 있겠는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수립과 2012년 ‘리우+20’회의

1. ‘리우+20’ 회의의 분야별 행동계획

리우+20에서 ‘+20’은 1992년 최초의 지속가능발전 회의인 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로부터 20년 후에 개최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표현이다. 리우+20에서 채택된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스톡홀름 선언, 리우선언의 7개 원칙과 의제 21,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는 총 26개의 우선순위에 따른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이다.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방식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UN 개발 의제에서 빈곤퇴치를 최우선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빈곤퇴치에 있어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사회보장책(social protection system) 관련 이니셔티브 독려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둘째, 식량안보, 영양, 지속가능한 농업(Food security and nutri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분야이다. 기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섭취할 수 있는 모두의 권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농업 및 농촌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과 농업 기술 R&D, 도시-농촌간 연계 그리고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 등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식량안보를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한편 친환경적이기도 한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목지 및 관개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며, 어업 및 양식업, 건강한 해양 생태계의 역할 강조하였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책임 있는 농업 투자”를 촉구하였으며, 식량 가격이 보이

는 과도한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처방이 필요함으로 강조하였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과, 규범에 근거한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전 세계적 다자교역체제가 농업 및 농촌을 증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 분야이다. 물과 위생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제시한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 “생명의 물을 위한 2005-2015년 국제행동기간”(2005-2015 International Decade for Action ‘water for life’) 등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홍수, 가뭄, 물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와 수질오염 완화, 수질향상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에너지(Energy) 분야이다.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sustainable modern energy services)에 대한 접근성 향상시키고, 현재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14억명에 대한 지원 촉진 의지 확인하였다. 국가적 지방 단위의 에너지 정책 및 전략 이행을 지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모색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의 ‘모두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all)’이니셔티브에 주목하였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분야이다. 잘 기획되고(well-designed) 관리되는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투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 분야이다. 사람 및 물류의 효율적 이동,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합리적인 교통에 대한 접근성, 도로 안전 등 지속가능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개발을 지지하였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human settlements) 분야이다. 도시 발전 및 거주지와 관련한 총체적(holistic)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urban planning)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도시, 지역사회간 파트너십 강화하고, UN Habitat 활동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덟째, 보건·건강 및 인구(Health and population) 분야이다. 보건의 지속가능발전 3대축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물이며, 보편적인 보건 혜택(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 인지할 것 그리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과 암, 심장혈관질환, 비만 등 비전염성 질병 모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TRIPS에 규정된 공공 보건 목적의 유연성 발휘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 관련조항을 재확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리더십을 지지하였으며, 베이징행동선언(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세계인구개발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지하였다. 여성 및 아동의 사망률 감소 및 양성 평등 제고를 위한 의지 또한 확인하였다.

아홉째, 생산적인 고용 확대, 일다운 일(decent work) 및 사회적 보호 촉진 분야이다. 현재 노동시장 여건, 일다운 일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고 미래 지향적 거시정책 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과 교육, 훈련, 의료보험, 사회적·법적 보호 등 근로자의 권리를 인식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부분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 업무(informal unpaid work)가 기여하는 바를 인정할 것과 일자리 창출, 실업 문제 대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 그리고 이주민들의 인권 및 근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열째, 해양(Oceans and seas) 분야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 범지구적 채택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며,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개도국의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해야 하며, 총회 내 설립된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를 지지하며, 2014년까지 1차 평가 보고서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69차 총회 폐막 전까지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하 국제적 수단의 개발, 해양 오염, 외래 침입종, 해수면 상승, 해안가 침식,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ocean fertilization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합의된 2015년까지 최대지속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족 자원 유지 및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으며 규제되지 않는(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획을 근절할 것과 지역수산기구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어업관리 필요성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불법 어획 보조금 근절, 이를 위한 어업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율을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산호초, 망그로브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해안 및 해양 지역의 10%를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지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한 생물다양성협약 (CBD)의 결정을 주목하였다.

열한째, 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분야이다.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의 5개년 평가서에서 도서 개발국이 대부분의 다른 지역보다 덜 발전해왔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과 모리셔스 전략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도서개발국 지원 그리고 2014년에 제3차 도서개발국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67차 유엔총회시 동회의의 세부사항(modalities)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열두째,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분야이다. 이스탄불

행동 프로그램(Istanbul Programme of Action)의 효과적인 이행에 합의하였다.

열셋째, 내륙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분야이다.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Almaty Programme of Action)에서 합의된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다.

열넷째, 아프리카 분야이다.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큰 도전요소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아프리카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들의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열다섯째, 지역적 노력(Regional efforts)분야로 지역적 행동을 조율(coordination)할 것을 독려했다.

열여섯째, 재난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분야이다. 효고 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포괄적 위험 평가, 정보 공유 등의 중요성과 다양한 재난 대응 계획간의 연계(interlinkage)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열일곱째, 기후변화(Climate change) 분야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큰 도전요인 중 하나임을 재확인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당사국들로 하여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형평성(equity), 개별 능력(respective capability)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나아가 녹색기후기금(GCF) 출범을 환영하며, 조속한 운영을 촉구하였다.

열여덟째, 산림(Forests) 분야이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 증진,

산림 회복, 녹화 등은 증진하고, 산림전용(deforestation), 산림 황폐화(forest degradation)를 중단해야 하며, ‘세계 산림의 해’ 출범을 계기로 개최된 유엔산림포럼 9차회의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등 산림 관련 비구속적 문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엔산림포럼이 산림 분야 협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정책 목적 및 관례가 주류 경제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열아홉째,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분야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이행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의 달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조속히 발효되기를 기대하였다. “2011-2020 UN 생물다양성의10년” 지정을 환영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스물째, 사막화, 토지 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분야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및 “동 협약 이행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2008-2018)”을 지지하였다. 사막화, 토지 황폐화, 가뭄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 및 지표 개발 필요성 강조하고, 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른 관련 작업반을 설립할 것에 주목하였다. 기후·날씨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스물하나째, 산(Mountains) 분야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indigenous peoples)과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소외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각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산악 지역 발전에 관한 장기 비전을 마련할 것을 독려했다.

스물두째, 화학물질 및 폐기물(Chemicals and waste) 분야이다.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명시된 2020년까지 화학 물질의 건전한 관리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의 효과적 이행과 강화를 촉구하였다. 최빈개발도상국 등의 위험 화학물질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바젤협약,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화학 폐기물 관련 협약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일생 주기 접근법(life cycle approach) 채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위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 및 불법 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과학에 기초한 위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은(mercury)’에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환영하였다. 오존과피물질 단계적 사용 감소에 따른 대체물질인 수소화불화탄소의 사용도 감축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자금 조달과 관련한 UNEP 사무총장의 제안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스물셋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분야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에 대한 10개년 계획(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을 채택하고, 67차 총회에서 동 10개년 계획을 이행할 국가기관(Member State body)을 선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스물넷째, 광업(Mining) 분야로, 1992 리우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은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주권의 보유를 인정하고, 광업 분야 법률 규제 장치, 정책, 관습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스물다섯째, 교육(Education) 분야이다. 보편적으로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에게 초등교육 이상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과 젊은 세대 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등 교육기관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 및 혁신 모색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스물여섯째,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분야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협약의 이행을 통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 주역으로서 여성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UN-Women과 같은 UN 내 관련 활동을 지지하였다(외교통상부 2012, 33-40).

2. ‘리우+20’ 회의의 내용과 시사점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87개 유엔 회원국에서 정상급 120여 개국, 각료급 46개국 등을 비롯하여 유엔 전문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약 5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의 의제는 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와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리우+20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정치선언문의 성격을 지니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통해, 회원국들은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공고하게 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둘째,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UN 차원에서 최초로 녹색경제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포용적 성격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 아동,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관 파트너십 강

화를 촉구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각 국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가 유용한 수단이었음을 인식하며 동 목표의 최대 달성을 공약하는 한편, 의제21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설정할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post-2015 개발 의제와의 연계를 촉구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개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목표는 기존의 리우선언의 원칙들에 의거해야 하며, 각국별 사정, 능력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고 국제법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범국가적 논의체재를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67차 유엔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포함한 작업방안을 결정하고 68차 유엔총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을 신설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분명하였다. 선진국들은 신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능 등 녹색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모든 참가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선도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녹색경제는 하나의 정책적 옵션임을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재정적 지원을 증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유엔환경계획(UNEP)을 전문기구화 하는 데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참가국은 국제 환경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환경관련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에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EU 및 아프리카 정상들은 유엔환경계획의 전문기구화 실패에 대한 아쉬움 피력하기도 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에 이어, 리우+20회의에 있어서도 선진공업국과 개

발도상국 간의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선진공업국은 리우+20회의가 커다란 진전을 아니지만 일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개발도상국 특히 인도의 경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말잔치를 반복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인도는 자국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을 통해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외교통상부 2012, 41-44), 이는 선진공업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에 대한 약속의 이행여부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리우+20회의의 참여와 행동계획에 대한 협력의 실행에 관건이 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리우+20회의는 녹색성장,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념임을 명시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유엔환경계획의 전문기구화에 실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대를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 고위급 정치포럼을 설치하는 데에는 합의하여,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화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 정치포럼은 양 진영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리우+20회의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견인차는 ODA라 할 수 있다. 리우+20회의는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P의 0.7%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데에 합의했으나, 유럽연합의 경제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3. ‘리우+20’ 회의의 성과와 과제

리우+20회의 주된 성과는 첫째,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인정된 점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의 하나로서,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국제조직으로서 서울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GGGI는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하여 GGGI 설립협정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협정을 통하여 GGGI의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GGGI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항구적 자산으로서 녹색 성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녹색성장과 관련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한국이 제안한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최종 문안에서 삭제되었으나, 녹색경제를 위해 자원, 정보공유, 능력배양 등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 및 신생 플랫폼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GGGI는 동 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또 다른 제도적 틀은 정부 간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산하에 고위급 정치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리우+20회의는 UN경제사회이사회가 중추적 기관임을 재확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2013년 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하여 고위급 정치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고위급 정치포럼은 정치적 리더십, 가이드스 정책 제안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논의, 역할 분담 및 의제설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과거 공약의 이행의 검토 및 고위급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비록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의 공간이 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UN 체제의 유기성을 제고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유엔총회를 통해 구체적 분야 및 목표 설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SDGs는 1992년 리우선언의 원칙들에 의거하여 각 국가의 사정과 능력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고 국제법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

의하였다. SDGs는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다 실현가능하게 하는 이행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체제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 및 질을 제고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다수의 선진국이 ODA의 규모를 2015년까지 GNP의 0.7%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합의했으며, 유엔 총회 산하에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process)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정부간위원회는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재원이 필요한 분야 및 효과, 시너지 제고 방안 및 신규 이니셔티브 등을 검토하여 2014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리우+20회의는 재원 마련에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논의했으며,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가 보다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GGGI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녹색경제가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GGGI는 기후변화각료회의는 물론 환경관련한 많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과 성장에 관한 후속적인 회의를 선도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GGGI는 물론 한국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민-관 거버넌스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68차 유엔총회에서의 논의가 보다 실현가능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SDGs가 각국의 사정과 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DGs와 ODA의 분야 및 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

기 때문에, GGGI는 물론 정부간위원회가 각국의 사정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위급 정치포럼이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협력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1.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UN환경개발회의(UNCED, 이하 리우회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소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의제 21’을 통해 직접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2000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표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 즉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환경문제는 불평등과 고난을 일으키는 힘의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발전은 통합된 하나의 실체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과 국가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없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WCED는 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모든 유형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차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다시 경제 발전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자연자원을 보존하

기 위해 시간적으로는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이를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요컨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WCED의 이런 입장은 1992년 UNCED 즉 리우회의에서 재확인되고 그 의미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의제21(Agenda 21)’까지 채택되었다. 그런데 리우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의제21’의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의 의미를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즉 자연이 오염 파괴되지 않고 자기조절체제를 유지하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와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의 생태체계를 유지시키는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UN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고, 각 국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인 PCSD가 설치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층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명목적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물론 영국을 비롯한 서북유럽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생태근대화(ecological development) 개념이 발전하고 1998년 녹색당이 사민당의 연정파트너로 집권여당이 되어 환경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지못해 따르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국정의 중심 어젠다로 쉽게 인정받지 못했으며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 8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주는 가운데 성사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존의 정부부처들과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간에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했으며, 아직도 그 괴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것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상을 높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구성 시기에 있어서는 뒤늦었지만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것은 구성 내용상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으로 관계부처 장관 12명과 간사인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당연직 13명이 참가하고 이에 민간위원 20명을 덧붙여 출범한 것은 대단한 위용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발표되었고, 그 1년 후인 2007년 8월에는 대통령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그해 5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라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였다.

한편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녹색성장 전략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서 탈피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성장 정책이 아직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서구적 기준인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에 더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

정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지금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나 그 위용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보다 못하며, 따라서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게 녹색성장이라는 보다 경제중심으로 구체화시킨 실천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도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호성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환경보전과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하기보다 추상성을 높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처음엔 무엇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부진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요소로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economic growth),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세 차원을 두루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요소로 첨가된 것은 시민사회의 영향이 컸다. 원래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 및 파트너십이 존재했다. 그 회의에서는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등이 채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약이 있었다. 당시 정부대표들의 모임과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따로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를 개최하고 ‘지구헌장’을 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을 채택하며 정부대표들의 실천의지 천명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리우회의에서 ‘의제21’이 합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구 차원의 상위 개념인 ‘의제 21’을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하위 개념인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서는 지방정부-지역기업-지역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협력자로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 점차 하위단위로 내려갈 때, NGO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1992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거기서도 빈곤과 착취의 제거, 민주화를 포함한 제도 변화, 그리고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단순히 환경과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환경과 경제라는 두 축으로부터, 환경-경제-사회라는 세 축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되었다. 생태근대화론에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통합하고자 하면서 그로부터 여러 어려움이 파생되기도 했는데, 지속가능발전론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사회통합이라는 또 다른 상이한 요소가 첨가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 세 축의 목표가 모두 달성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세 축에 대한 강조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즉 이는 이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에 견주어 우리가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축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추상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상징성 때문에-즉 추상성이 높

음으로써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애매해 보이며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Jacobs 1995). 즉 어떤 측면에서는 이를 보수적인(conservative) 경제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급진적인 사회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는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와 반대로 생태주의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되 생태주의의 급진성을 피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환경운동가나 급진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통합 개념이 민주주의 발전이나 빈부격차 해소 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이 생태주의와 같이 무조건적인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근대화가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대화라는 용어를 계속사용하면서도 환경론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도 환경주의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도로서의 환경과 사회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정대연 2003, 59). 첫째, 인간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둘째, 인간의 욕구충족은 자연을 통해 가능한데 이를 위한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며, 자연훼손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자연보전의 목표이다. 셋째, 위 둘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발전과 자연보전의 조화에 두고 있다. 넷째, 자연훼손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도 현세대처럼 경제발전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자연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중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중심적 개념이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공간적으로는 나라간 형평성, 시간적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형평성의 사회적 목표이다.

3. 한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주의의 자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이 초래하기 쉬운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므로써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1992년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이후 아직 정부차원에서 중심적인 의제가 되기 이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1994년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4)’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지방의제 21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그 후 지방의제 21은 상당한 정도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말 경기도 안산시에서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지방의제 21이 검토된 적이 있으며, 이것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1995년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이다. 그 후 2010년 말까지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와 205개 기초자치단체 등 22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0% 이상이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오수길 2011, 4).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지방의제 21을 수립하고 2000년 국

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제 21은 1999년 9월 제주에서 ‘제1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의제21 전국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어 2000년 6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2007년 1월부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들여 지방의제 21을 계속 시행하고 조직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리우+10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지방의제21 네트워크 활동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제21을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집단은 지방의 시민단체들이었으며, 그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니셔티브와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쪽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가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설치하고 이것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조직화가 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중앙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는 부족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는 처음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의제 21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기 내세웠던 높은 이상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지방의제 21이 의제작성과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성형식에서의 거버넌스 틀은 갖추어 왔지만, 의제 활동에 대한 행정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며, 지방의제 21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 역시 의제 활동을 자신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

지 못하여 참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정규호 2005, 48). 요컨대 지방의 제 21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활동은 정부, 기업,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채, 일반시민들을 대신한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만으로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의 제 21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0% 이상의 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의 부재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 생태주의와 생태근대화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의 실패 및 성과의 부족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즉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의 목표에서 생기는 개념상의 모호성,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되었는데 환경운동단체들은 생태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보다 생태주의(ecology)에 더 경도되어 경제를 경시했다는 점이 그 원인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들은 원래 생태주의에 입각한 환경운동을 하다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기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생태주의 입장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경제성장에 보다 관심을 갖는 정부나 기업과의 의견충돌이 빈번했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조차 친환경적 생활이나 웰빙생활은 좋으나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생태주의적·자연주의적 생활에는 큰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이 근거하는 생태주의는 인간중심적인 근대사회가 근대화(modernization)를 통해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생태주의자들은 근대화를 옹호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자연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하자는 환경주의에는 반대한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자연은 그 자체 내재적인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도구가 아니며 따라서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본성까지도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지닌 어떤 질서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어떤 생물 종의 완전한 멸종은 인간삶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동물학대나 사냥은 곧 인간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국에 인간삶의 질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박필배 2007, 220-221).

생태주의는 급진화되면서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진행한다. 이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 관점에 입각해서 “신의 피조물들 간의 민주화”(Pepper 1984, 27)를 토대로 삼는다. 따라서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에는 최소한의 피해만 가도록 하는 선에서 사회적 생산이 지속되도록 하자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환경(개량)주의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자연은 인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유형의 자연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법칙에 순리적으로 따라야 하며, 전체 생태계와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환경보호주의의 목표인 자연현상을 보호하거나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생태계의 상호연관성 즉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보전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구조, 교육제도, 보건, 문화적 표현 그리고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의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생태적 질문이 사회적 질문으로 진전되면서 사회적 생태주의(social ecology)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회적 생태주의자인 북친(Murry Bookchin)은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자연과 사회 관계 사이의 이론적 통합을 추구한다. 북친은 생태위기의 뿌리가 맬더스주의자들처럼 인구성장에 있다거나, 환경주의자들처럼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착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관념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운동은 사회운동이 되어야 하며, 이 운동은 지배와 위계질서를 생산하는 인간사회에서의 도덕적인 변화, 나아가서는 제도적인 변화까지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위기의 해결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주의 위계질서만이 아니라 인류역사 속의 모든 위계질서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계질서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경제제도, 생활양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에 확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생태주의는 인간의 삶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주의적 혹은 생태주의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질서, 즉 근대적 사회 및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이것들과 연관된 각종 자본주의적 문화를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자연주의적 삶을 살 것을 권고한다.

이에 반해 생태근대화론은 1980년대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환경과 경제 문제를 근대화의 틀 내에서 흡수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로 인식되어 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산업적 근대성의 틀 안에서 통합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거나(Buttel 2000),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환경보전적 산업활동을 하면 결국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Dryzek 2005) 상정한다.

따라서 생태근대화론은 반근대화(anti-modernization) 혹은 과거로의 회귀나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폐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을 중심으로 한층 더 근대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건전하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월은 “환경위기는 기존 제도를 더욱 근대화시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

다”(Weale 1998)고 말한다. 생태계의 한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성장을 피함으로써 그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태근대화론은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이니셔티브 하에 실제 정책에 적용되면서 정책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 분야에서 미국보다 많은 환경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계를 깨트렸다. 이들은 생태적 근대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원증가와 분리된 성장이 가능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법률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후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호주에서 개최된 ‘환경정의 회의’에서도 생태근대화론이 21세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개념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생태주의자들은 생태근대화론이 여전히 근대화의 신화에 발목이 잡혀 생태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생태근대화론은 근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유지를 목표로 할 뿐이라고 폄하하면서 근대화론의 아류로 치부한다. 하지만 생태근대화론자들은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성을 갖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태주의적 입장과 생태근대화적 입장의 차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석할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시민사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경우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경우엔 생태근대화에 입각해 경제를 중시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려는 현실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5.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시민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신하여 생태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기업이나 일반시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하시키고 새로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먼저 녹색성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아직 경제발전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저개발국들에게는 빈곤탈출을 위해 서구적 기준인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경제 성장에 좀 더 중심을 두는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999년 말 출판된 에킨스(Paul Ekins)의 저서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에서 비롯된다. 에킨스는 책의 부제에 녹색성장을 위한 전망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 후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태환경개발 장관회의(MCED)에서 한국이 이 문제의 타당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지지를 표명하였다. 녹색성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후에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국가들이 지지하면서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최근 열린 2012년 리우+20회의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란 개념이 등장하는데도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개발국가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실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42). 특히 녹색성장은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훼손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아태지역 저개발 국가들을 비롯하여 이미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실천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론은 앞서 설명한 생태근대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 생태근대화는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말자거나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한층 더 근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건전하게 경제성장을 추진하자는 논리를 펴낸다. 특히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가능하며, 친환경적 경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고, 경제성장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생태근대화는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는 ‘성장지상주의’나 환경보전만을 강조하는 ‘생태중심주의’에 반대하면서, 이 둘 사이의 타협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은 이런 생태근대화를 보다 진전시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부분을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는 성장과 환경 사이의 단순한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고도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절충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조화와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아쉬운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성장론에는 녹색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창출,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시장개척 등과 같은 경제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등과 같은 환경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시민사회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민사회전략은 부족하다(이동수 2012).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에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외에 사회통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통합은 시민사회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통합은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포용하고 시민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복합적인 전략인 녹색성장은 그 목표의 다양성 때문에 정부 혼자만의 이니셔티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기업은 녹색기술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시민은 비록 비용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의식을 지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기업-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녹색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환경보호와 사회통합의 목표는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녹색성장정책에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교토위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999년 <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은 처음부터 저탄소사회 구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행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컨대 협의회 설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각의에서 결정된 <저탄소사회 구축 행동계획>에는 목표실현을 위해, 첫째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존 선진기술의 보급, 둘째 일본 전체를 저탄소화로 이끄는 기제 마련, 셋째 지방 및 국민의 참여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에너지 절약이나 IT 활용과 더불어 NGO와 지역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 국민의 인식변화와 일상의 생활양식 변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따라서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정성춘 외 2009, 371).

이에 비하면, 한국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중심이며, 이를 위한 녹색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지속가능발전론에 비하면 환경보전 부분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다.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여전히 생태주의에 입각해 있거나 지속가능발전론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생태근대화나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물론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을 중시한 나머지 환경보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목표인 사회통합은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주요 사업이라고 보고, 그 최종목표가 환경을 보존하는 녹색국가가 아니라 개발을 추진하는 토건국가라 비판하면서 정부와 빈번히 충돌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1).

6. 녹색생활의 실천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문제를 제일 순위로 생각한 나머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훼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성장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을 위한 환경’에 지나지 않는다. 생태주의를 제외하고 생태근대화나 녹색성장, 심지어 지속가능한 발전까지도 단순히 환경만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적으로 삼는다(이동수 2012). 한국 시민사회는 생태주의에 입각한 자연관에서 벗어나 좀 더 생태근대화에 입각한 환경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직시하고 경제가 보다 강조되는 녹색성장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에게는 보다 설득력있는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큰 지지를 받아 국내기구로 설치된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2012년 국제기구의 지위로 격상되었으며,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인 GCF(Green Climate Fund)의 사무국을 유치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리우+20회의에서는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제시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인류에게 있어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다만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경제성장, 그리고 한국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환경운동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시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증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발전을 청정에너지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안정성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 생활운동단체들의 경우엔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그것이 초래하게 될 녹색생활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경우엔 녹색소비가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이롭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친환경적 운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여성운동이나 에너지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족한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이나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긴급히 필요한 것은 실제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일이다. 즉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생활운동에 접목된 녹색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민운동은 단순히 환경보전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세계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웰빙을 추구한다. 이러한 웰빙은 단순히 자연주의적 삶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뒷받침되고 녹색생활이 이것들과 선순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시했던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축을 다시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의 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이 고민해야 한다.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사회목표가 아니라 보다 실생활에 적합하며 일반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V.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대책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적개발원조

원조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원조의 모습을 보인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 불리는 개발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증여 또는 양허성 차관으로 이해된다. 개발원조가 전체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정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조정책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는 냉전구조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제사회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집중되었던 개발의 중점과제 이외에도, 환경, 인권, 여성, 아동, 사회개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구적 공공재인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생성되었다. 1985년 오존층 보전을 위한 비엔나회의를 서두로, 1987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조인되었고,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제이로에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 즉 리우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강령인 ‘의안 21(Agenda 21)’을 채택되었다. 1997년에는 UNFCCC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에 그 효력이 발효되면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채택되었다(황원규 2010, 14).

1990년대 이후 개발원조의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원조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이다. 즉, 지구적 환경문제의 등장과 함께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대외원조에도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경제개발 일색의 반건 담론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박효진·윤

수진 2011, 182). 다시 말해,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와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면서, 1990년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모색한 시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원조의 양이 증가하였고, 원조정책의 녹색화가 진행되었다 (Hicks et al. 2010, 1-19).

요약하건데, 1972년 유엔 인간 환경회의(UNCHE)가 개최된 이후 10년 단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UNCED)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의제(Agenda) 21으로서,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3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유엔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여 8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설정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02년 남아공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world summit’(WSSD)이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기술적인 목표라기보다 규범적 가치체계에 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¹⁵⁾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의 담론, 규범, 행동전략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담론, 규범, 행동전략으로 인식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기로 환경은 발전 담론과 결합하였고, 대외원조 역시 녹색화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19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 수단으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리우 협약(기후변화,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에 합의하였다” (박효진·윤수진 2011, 185). 즉,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개발원조가 소위 친환경적인 원조의 모습을 함께 보이기 시작하였다.

15)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관념을 1)환경과 경제의 통합, 2)미래가능성, 3)환경보호, 4)형평, 5)삶의 질, 6)참여의 6가지로 요약하기도 한다.

보다 최근에는 OECD/DAC(개발원조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 환경 분야 ODA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위상과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OECD/DAC는 2006년 ‘기후변화적응과 개발협력의 통합을 위한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 (ODA Watch 2010).

지구적 환경이슈를 개발의제로 통합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노력이 확대되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공여국들은 환경적 고려를 적극 반영하여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2010년 평균 일본, 북유럽국(스웨덴, 핀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친환경 원조 비중이 30-50% 수준(일본 56%, 스웨덴 52%, 독일 43%, 스페인 39%)을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2012 년간 100억불 규모의 친환경 원조를 진행하였고(이구성 2011), 영국은 2008-2010년간 11.8억불 규모의 친환경 원조를 진행하였다. 독일의 경우, 국가의 지속가능국가전략과 공적개발원조(ODA)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의 지속가능국가전략은 2002년 이후 지난 8년간 정권과 연정과트너가 바뀌어도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으로서, 1961년 11월 4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지속가능국가전략이 ODA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다(장준호 2011, 25-26).

더불어, 일본의 Cool Earth Partnership, 영국의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International Window, 독일의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등 OECD/DAC 주요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및 주요 환경 문제 해결에 특화된 이니셔티브 사업 실시하였다.

다자원조의 경우도 지구환경기금(GEF),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다자기금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

회 2012, 1).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기금(GE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최빈국기금(LDCF)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하였다. 기타 UN, 세계은행 등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지원기금 운영하고 있다 (예, UN(산림전용방지 온실가스감축), WB(산림탄소파트너십, 기후투자기금))(녹색성장위원회 2012, 3).

2. 한국의 ‘녹색성장’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한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서 1987년에 발표된 Brundtland Report에서 정의한 개념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의 보고서로 그 기원이 올라가는데, 이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증가와 성장이 계속되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이 심해지며, 인구는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Meadow et al, 1972). 이러한 주장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와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박효진·윤순진 2011, 176).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이 선언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이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환경과 경제성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은 1992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선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요소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표희동 2010, 83).

한국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1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제9931호, 2010.1.13). 또한 이 법에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명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많은 논의와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해석상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여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는 환경과 개발, 그리고 사회의 균형이 현실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최석범, 한상훈 2010, 162).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를 기준으로 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주류경제학자들의 입장으로 모든 형태의 자본은 서로 대체 가능함으로 자연자본도 기타 인공자본과 대체가능하다고 봄으로써 환경을 다른 자본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와 혁신 등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총자본’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적인 학자들은 자연자본의 일부요소를 다른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의 이익만이 아닌 자연의 권리와 이익을 평등하게 인식하여야 함을 주장한다(Turner, 1999; 표희동 201,0 85-86 재인용).

한편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기념축사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칭하고 있다(윤순진, 2009).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 등의 많은 전략들을 발표하였다.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중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장 2조).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배경 속에 등장하였는가? 녹색성장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UN의 제5차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장관회의(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면서부터이다. 이 회의에서는 빈곤 해결을 위해 성장할 필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아·태지역내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의 질을 저하시켜온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성장

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윤순진 2009, 225). 1980년대부터 전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한 세대를 이끌었던 지속가능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이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최석범·한상훈 2010, 162-163).

이것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녹색성장의 개념이 적용대상이나 배경, 지향하는 목표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려준다(윤순진 2009, 225). 지속가능발전이나 녹색성장은 모두 환경과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둘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개발과 녹색성장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녹색성장이란 개념이 지속가능발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없으나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호석·김종호·이정호 2009, 19-20). 그러나 이러한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윤순진(2009)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세 가지 차원을 고르게 충족시키는 발전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립성에 주목할 뿐 사회정의라는 차원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녹색성장의 상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응을 계기로 출현하였다. 1992년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한국은 2002년에 비준하였으나 비준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non-annex I)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이 한국·멕시코 등의 국가들도 자발적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아르헨티나나 카자흐스탄 등 일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제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개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의 배경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등장하게 되었다(전재경 2009, 33).

3. 한국의 녹색 ODA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위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진국들의 대외원조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관련 원조의 양을 증가하게 되었고, 세계는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녹색뉴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를 녹색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린ODA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에 Green ODA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Roberts et al., 2009).

한편, 한국은 원조를 시작하는 단계였던 1990년대에는 ODA에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대외원조는 “한국형 ODA”라는 발전 모델을 수립하여 빠른 시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특수한 발전경험을 세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외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이태주 2003). 실제로 1990년대 원조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나 환경관련 회의를 소개하는 등 전 지구적 담론의 흐름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지속가

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정책단계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¹⁶⁾

그러나 2010년 한국은 OECD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효과성 개선이나 기후변화-환경-개발의 연관성 강화 등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대외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박효진·윤순진 2011, 176).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경우, 환경을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에 환경여성팀을 신설하기 시작하면서이나, KOICA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사업집행기관이 되면서 기후변화대응반을 신설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련 예산과 사업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관련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연간 5건 이하에 머물렀으나, 2007년 이후 1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29건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KOICA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관련 개발원조에 633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프로젝트형 사업의 26.8%로 7개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이다. 2001년 환경부문 예산이 5억여 원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해본다면, 환경관련 원조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박효진, 윤순진 2011, 176-177).

한국 정부 역시 녹색성장 전략에 입각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녹색 ODA를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2009년 11월 재정부 차관이 현재 14%인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협조용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¹⁷⁾ 더불어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가 <한국

16) 과거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ODA 공여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녹색 ODA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양자간 ODA 중 녹색 ODA는 전체 ODA 중 11%를 차지하였고, 2008년도에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으로 인해 17%로 증가하였다. 특히 에너지, 식수공급 등 관련사업도 기후변화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녹색 ODA로 분류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사업 분류로는 녹색 ODA를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권을 외 2010, 63).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강화’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을 제시하였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녹색 분야 지원규모를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ODA 비중을 2007년 11%에서 2020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ODA Watch 2010).

한국의 녹색 ODA는 저탄소·녹색성장 개념에서 생겨난 것으로 단순히 환경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구한다. 즉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녹색 ODA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녹색성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국토, 생활의 녹색혁명 등을 포괄하는 것처럼 한국의 녹색 ODA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을 모두 포함한다(강연화 2009, 122).

Hicks et al.(2008)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측면의 ODA는 ‘Brown ODA’와 ‘Green ODA’로 나뉘지는데 특정국이나 일정장소(Local)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업-예를 들어 토양 침식, 하수체계 정비, 식수문제, 위생시설 등-은 Brown ODA로 분류하고 범지구적, 지역적(Regional)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업-범지구적 환경보호나 생물다양성, 초국경적 대기 및 수자원 오염, 오존층 보호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한 사업-은 Green ODA로

17)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녹색성장 전망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은 ‘국가의 성장패러다임을 196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경제성장 5개년 계획에서부터 강조한 ‘양적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중대한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가 오늘날의 경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며 정부가 급박한 현실과 변화의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짓고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강화, 신성장동력의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 복원 등에 걸쳐 종합적이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녹색경제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충분히 그리고 확고하게 답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전재경 2009, 34-35).

분류된다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녹색ODA는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원조가 아니더라도 특정국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업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Green ODA보다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강연화 2009, 123).

그러나 녹색성장에 기반한 녹색 ODA는 모든 환경문제를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적 고려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녹색 ODA는 환경을 하나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이나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공여국의 산업적 성과와 기후변화 협상 기반 구축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개도국이 경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차별적 피해의 해소나 적응능력 구축은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박효진·윤순진 2011, 196). 따라서 한국의 녹색 ODA는 녹색가치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희석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환경원조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환경원조의 범위가 기후변화 이외의 환경사안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녹색 ODA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원조의 녹색화'

개도국의 환경을 고려하는 원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국제사회는 환경을 모든 영역에서 접합되는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이슈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발원조 사업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통합하는 '환경 주류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개발도상국의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들은 환경 주류화를 효과적인 전략으로 채택하여 정책 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 등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즉 '원조의 녹색화'

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구성 2011, 173). 예를 들어, UNDP는 2004년 환경 주류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환경 주류화'란 환경 이슈를 의사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정을 통해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환경적 기회요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원조의 녹색화'란 국가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원조 사업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환경 ODA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환경 ODA 분류 기준에 따르면, 환경마커(Aid to Environment market)와 리오(Rio marker)가 있다.

환경마커는 개발원조사업 수행체제의 각 단계마다 환경 이슈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4개의 환경정책 마커를 성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OECD/DAC의 통계 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분류상 일반 환경 보호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 ODA로 분류되며, 일반 환경 보호 원조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환경 보호를 가장 중요한 (principal objective)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과 환경 보호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significant objective)인 사업도 환경 ODA 로 분류된다. 한편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는데 ODA 중 이들 협약과 관련된 ODA를 별도로 분류한 것이 리오마커이다 (이구성 2011, 173; 권을 외 2010, 146-48).¹⁸⁾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범정부적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통해 환경 이슈 주류화를 정책문서로 공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SEA)를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들을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체계적으로 통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ODA사

18)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정부도 녹색 ODA 확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녹색 ODA' 개념은 환경 분야 협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개도국에서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DAC의 분류 기준에 따른 환경 ODA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이구성 2011, 174).

업의 확대 보다는 환경의 주류화(mainstreaming)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개도국에 대한 녹색 ODA 지원비중을 양자간 ODA의 11%(2007년) 수준에서 2012년 18%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이를 위해서는 모든 ODA 사업에 환경 이슈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개도국 지원사업이 환경 ODA로 정책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주지된다.

스웨덴의 경우가 성공적인 환경 ODA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스웨덴의 환경경영시스템은 하나의 일관된 환경정책으로서, 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정부에 대한 연계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정책은 개발과 환경보호가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는 기능을 하며, 행동계획은 리우협약 등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원조정책의 녹색화’란 크게 개발원조의 녹색화와 환경원조액의 증가로 나뉠 수 있다. 개발원조의 녹색화란, 원조프로젝트의 형성부터 모니터링 과정까지 매 단계에 걸쳐 환경적 고려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1990년 이전까지는 개발원조의 이행으로 인한 환경 악화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원조국/기관들은 규제가 전무하고, 환경적 이슈 등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원조국/기관들이 스스로 환경적 영향을 인정하며 대체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어 환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녹색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조전체에서 80%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개발원조 사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환경적 고려가 이행되는지를 평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원조의 녹색화’는 단지 환경원조액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발원조의 녹색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발원조사업 수행체제의 각 단계에 환경 이슈가 통합되기 위해서 구체적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

인이 제시되어야 하며, DAC 통계 권고에 따라 4개의 환경정책 마커(maker)를 성과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개발원조사업에서 환경 주류화 현황을 연강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권율 외 2010, 146-151; (ODA Watch 2010).¹⁹⁾

따라서 한국 정부도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조 분야에서 환경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협력사업에서 환경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개발원조사업 수행체제의 각 단계에 환경 이슈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침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 모니터링, 평가 활동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5. 향후 과제 및 정책적 함의

앞서도 언급했듯이, ‘원조정책의 녹색화’란 환경 주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즉, ‘원조정책의 녹색화’는 개별 환경원조 사업의 확대보다는 환경의 주류화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환경이슈를 모든 개발협력활동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정비도 필수적이다(권율 외 2010, 146).

본 보고서는 이러한 ‘원조정책의 녹색화’라는 국제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한다. 더불어 이러한 흐름과 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향후 보다 관심 갖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원조정책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조의 녹색화’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함께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조건이자 공통의 매개체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까지 크게 관심 갖지

19) 환경원조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많은 원조국들이 환경원조액을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내 환경원조의 정의나 기준(criteria)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원조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녹색 ODA에 대한 실제 통계를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치가 도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의 신빙성이 모호할 수도 있다.

않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조정책의 분야에 적용시킨 경우에도 수원국의 민주주의 조건을 경제적, 환경적 요인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원조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재고하고 이를 원조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필요성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자 한다.

무척 고무적이게도 최근 연구에서 원조정책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개발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주장이다. “현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현지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해당 국가에 ODA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ODA Watch 2012b).

‘원조의 녹색화’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본 연구는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도 있고 포괄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적인 담론과 윤리로서 널리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모호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의미가 경제발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정치 발전의 이해로 포괄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개발과 성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동반한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전략의 하나인 녹색 ODA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 ODA가 ‘원조의 녹색화’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부합이나 맹목적인 추종을 넘어서서 녹색 ODA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전략과 지침)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원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형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한국형 원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원조 수원국에서 가난과 빈곤의 늪에서 새마을 운동 등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예로 한국을 소개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개발 경험 ‘지식공유’ 사업은 경제성장만을 강조하고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어 균형감을 상실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편향적 접근은 개도국의 권위주의 정부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된다 (이성훈 2011). 따라서 한국의 진정한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이 이루어낸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강조하고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어 균형감을 상실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 양성평등, 보편교육, 인권신장, 시민사회의 성장, 환경개선 등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경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ODA Watch 2012a; 이성훈 2011). 따라서 한국형 원조가 새마을 운동식 경제성장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도 함께 이행해야 함을 함의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먼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현황과 사상의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과 ‘리우’회의의 변천과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전개 및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다 최근 이슈인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리우+20’ 회의의 분야별 행동계획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후엔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 보았다.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과 한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니셔티브, 생태주의와 생태근대화,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그리고 녹색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 및 발전방안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 ODA, 그리고 ‘원조정책의 녹색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역할과 의미에 주목하며 향후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리우+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함의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리우+20’ 회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논의 현황 파악과 한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으며, ‘리우+20’회의와 ‘녹색성장’의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녹색성장’ 비전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향후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 ODA’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Bookchin, Murray. 1980. *Toward an Ecological Society*. Montreal: Black Rose Books.
- Buttel, F. H. 2000. "Ecological Modernization as Social Theory." *Geoforum* 31.
- Donella H. Meadows, Dennis L. Meadows, Jorgen Randers and William W. Behrens III, 1972, *The Limits to Growth*, Universe Books.
- Dryzek, John. 2005.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kins, Paul. 1999.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London: Routledge.
- Hecks, Robert L., Bradly C. Parks, J. Timmins Roberts, and Michael J. Tierney. 2008. *Green Aid?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Assist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s, M. 1995. "Sustainable Development, Capital Substitution and Economic Humility: A Response to Beckerman." *Environmental Values* 4.
- Mol, Arthur. 1999.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Environmental Transition of Europe."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1(2).
- Pepper, David. 1984.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Routledge.
- Roberts, J. T., Parks, M. J. Tierney, and R. L. Hicks. 2009. "Has Foreign Aid Been Greened?" *Environment*, 51(1).
- Weale, Albert. 1998. "Ecological Modernization." John Dryzek and David Schlosberg, ed.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권을 외. 2010. 『국제사회의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현황 연구』 . 한국국제협

력단.

- 김관석·사득환. 1998.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 『한국정치학회보』 32(4).
- 김호석·김종호·이정호. 2009.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의 녹색성장 의미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 녹색성장위원회. 2012.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ODA 발전 방안: 녹색 ODA 정책 이행점검 발표자료.
- 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저. 김병순 역. 2012. 『성장의 한계』. 서울: 갈라파고스.
- 미래기획위원회 편. 2009. 『녹색성장의 길』. 서울: 중앙북스.
- 박필배. 2007.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칸트연구』 20.
- 박효진·윤순진. 2011. “한국의 대외원조 녹색화 담론 분석: 양자 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9.
-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저. 조형준·홍성태 역. 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출판사.
- 안병욱. 2012.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 한계 그리고 대안.” <저탄소 녹색성장 4년: 성과와 한계> 세미나 발표문.
- 오수길. 2011.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정책: 지속가능발전대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외교통상부.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환경사회학연구』 13(1).
- 이구성. 2011. “일본의 환경 ODA 추진 동향과 시사점.” 『해양수산』 2.
- 이동수. 2012. “인간과 자연의 조화: 환경론의 변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녹색성장연구회 발표논문.
- 이성훈. 2011.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에 추구해야.” 『한겨레』 11월 28일.

- 이태주. 2003.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와 발전담론.” 『비교문화연구』 9(1).
- 이태화. 2012. “Rio+20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녹색경제의 이해.” 『ECO:환경사회학연구』 16(1).
- 이홍균. 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사회학』 34.
- 장준호. 2011. “세계위험에 대한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대응: 지속가능전략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 전재경. 2009.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서강법학』 11(2).
- 정규호. 2005.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지방의제21.” 『도시와 빈곤』 75.
- 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환경영향평가』 12(1).
- 정성춘 외. 2009.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진상현. 2008.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 . 16(3).
- 천정웅. 1995.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 환경정치와 환경레짐의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석범, 한상훈. 2010. “녹색성장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8(2).
- 표희동. 2010.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Blue Economy에 대한 기초설계와 실재.” 『해양정책연구』 25(2).
- 환경운동연합 편. 2011. 『토건성장체제 극복 위한 2012 녹색의 도전』. 환경운동연합 2012 워크숍 발표집.
- 황원규. 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2010 DMZ PEACE CONGRESS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집.
- ODA Watch. 2009. “정책포럼: 녹색ODA의 가능성과 우리의 개발대안.” 뉴스레터. 31호. 11월 30일.
- _____. 2010.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정책, 그리고 Green ODA.” 뉴스레터. 41호. 5월 1일.

- _____. 2012a. “한국형 원조 심층 분석 시리즈 ①한국형 원조,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레터. 64호. 4월 1일.
- _____. 2012b. “민주주의와 인권, ODA를 만나다! 한국 ODA, 그리고 민주주의 토론회.” 뉴스레터. 70호. 10월 2일.

<부록1>

유엔인간환경선언(1972년 6월16일, 스톡홀름)

1. 인간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지성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해주는 환경의 창조물이자 형성물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가속화되면서 이 지구에서 인류의 길고 험난했던 진보는 인간이 무수한 수단과 전례 없는 규모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양 측면은 인간의 안녕과 기본권의 향유, 생존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일은 세계인의 절박한 소망이며 모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3. 인간은 항상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조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이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와 발전의 혜택을 모두에게 줄 수 있다. 이 능력을 부주의하고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인류와 인간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는 주위의 지구 여러 지역에서 위험한 수준의 물과 공기와 토양오염, 생물권의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야기하는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장애들,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의 파괴와 고갈,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서 특히, 생활과 작업 환경에서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 건강에 해를 끼치는 총체적인 결핍과 같이 인류가 만들어낸 피해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개발도상국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저개발에 원인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적절한 의식주, 교육, 건강, 위생의 부족으로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그 우선순위를 마음에 새기고 개발 노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같은 목적으로 산업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환경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기술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5. 인구 수의 자연증가는 항상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인간이다. 사회적 진보를 추진하고, 사회복지를 창조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근면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인간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인간이다. 사회화와 생산의 진보, 과학기술과 함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은 나날이 향상된다.

6. 우리는 환경적인 결과를 위해 더욱 분별 있는 관심을 갖고, 세계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무지와 무관심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이 지구환경에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다. 반대로 더 많은 지식과 더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인간의 필요, 소망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서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자신과 후대에 전할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창조하고 환경의 질을 증대하기 위한 폭 넓은 전망들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열정적이지만 고요한 마음과 강렬하지만 정열적인 작업이다. 자연세계에서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세계경제사회발전과 평화의 기본적이고 확립적인 목표와 함께 모두 추구해야 할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목표이다.

7. 이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 집단, 기업과 단체들 모두는 공통의 노력 안에서 공평하게 책임감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 받는다. 여러 분야의 기관들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개개인은 스스로의 가치와 공동 행동으로 미래세계환경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지역과 국가 정부들은 법령 안에서 대규모 정책과 행동으로 커다란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책임을 수행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늘리기 위하여 국제협력 또한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이기 때문에 또는 공통국제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아지는 환경문제는 공통이익에 따른 국제기구들의 행동과 국가간의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사람들에게 후대와 모든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인간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공통의 노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 1

인간은 인간의 삶에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안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합당한 삶의 지위를 영위할 기본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남아공 인종차별, 식민주의, 기타 다른 형태의 압박과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정책은 비난 받고 없어야 한다.

원칙 2

자연 생태계를 대표하는 공기, 물, 토양, 동식물과 같이 이 지구상의 천연자원은 적절하고 주의 깊게 계획 또는 준비되어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3

필수적인 재생 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복구되거나 향상되어야 한다.

원칙 4

인간은 불리한 요인들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생득권과 서식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보호와 같은 자연보호는 경제개발계획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원칙 5

재생 불가능한 지구의 자원은 앞으로의 고갈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야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

원칙 6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는 정도의 양 혹은 농도의 유독성 물질이나 기타 다른 물질의 방출과 열의 배출은 생태계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오염된 국가의 국민들이 행하는 오염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원칙 7

국가는 바다에서 얻는 유익함을 해치거나 바다의 다른 법률적 사용에 방해되고, 해양 생물과 생물자원에 해를 입히며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의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원칙 8

경제사회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구의 상태를 조성하고, 인간을 위한 편리한 생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원칙 9

저개발 상태와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결핍은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국내노력과 필요 시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보조로서 충분한 양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전환을 통한 개발이 가속화될 때 가장 확실히 치유될 수 있다.

원칙 10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생태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환경관리를 위해서 가격의 안정과 기초 일용품과 원료구입을 위한 적당한 수입이 필수적이다.

원칙 11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그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달성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환경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국내, 국제 경제적 결과에 동의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원칙 12

개발도상국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상황, 개발계획에 환경보존장치를 포함시키면서 생기는 비용,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국제적 기술, 재정지원의 필요성 모두를 고려하여 환경을 보존,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3

좀 더 합리적인 자원관리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들의 개발계획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환경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에의 조화를 보장하는 통합되고 조정된 경제개발 접근을 해야 한다.

원칙 14

합리적인 계획은 환경의 보전, 개선의 필요성과 개발의 필요성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마찰을 조정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다.

원칙 15

계획은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최대한으로 이익이 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간의 거주지와 도시화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 인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원칙 16

기본인권에 대한 편견이 없고 정부에게 인정받은 인구 정책은 인구성장과 과잉인구집중도가 인간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발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17

환경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의 9개 자원에 대한 계획, 관리 또는 조절의 임무는 적절한 국가 기관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원칙 18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과 기술은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 기피, 조절과 환경문제의 해결 그리고 인류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19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연한 관심을 줌으로써 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문제 교육은 전체인간의 범위에서 환경보존과 개발 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언론이 환경악화에 기여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긍정적인 환경 개발보호 필요성의 교육적인 자연정보를 전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원칙 20

국내적이고 다국적인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연구와 개발은 반드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로 최신 과학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경험의 이전은 환경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즉, 환경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광범위한 보급에 기여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원칙 21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그들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자국의 법령과 통제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원칙 22

국가는 오염피해자들과 법령 또는 이를 넘는 지역의 국가 통제 안에서의 활동으로 야기된 기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원칙 23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합의나 개별 국가에서 확립될 표준에 대한 편견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각 국의 우세한 가치시스템을 배려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치 못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최선진국의 표준적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원칙 24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들은 크든 작든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국가의 협력정신에 의해 협조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이익과 주권보호를 위한 행위에서 야기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 감소, 보호, 통제하기 위하여 다국가간 혹은 양국간의 협력과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들이 필수적이다.

원칙 25

국가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한 협력적, 효율적, 그리고 역동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장한다.

원칙 26

인간과 환경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영향 없이 살아야 하며, 국가는 관련된 국제 조직에서 그러한 무기들의 완전 파괴와 제거의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록2>

나이로비 선언(1982년 5월 18일, 나이로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5.10-18 나이로비에 모인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공동체는 동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강구된 조치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각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해 엄숙히 요청하는 한편 세계환경의 현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환경을 보전, 개선하기 위한 전세계적, 지역적 및 국내적인 노력을 일층 강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스톡홀름 회의는 인간환경의 취약함에 관한 공중의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이후 환경과학에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교육, 광고활동 및 훈련은 현저하게 충실해졌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환경법령이 제정되었고, 상당수의 나라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규정이 헌법 속에 규정되었다. UN환경계획 외에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설립되고 환경면에서의 협력에 관한 여러 중요한 국제협정이 체결되었다. 스톡홀름 선언의 제 원칙은 1972년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원칙은 장래에 걸쳐 환경관련 기본적 행동지침이 된다.

그러나 주로 환경보전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또한 환경보전의 방법과 노력에 관한 조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 자원을 활용할 수 없고 그 배분도 불공평했다는 이유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을 뿐이며 그 결과는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행동계획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몇 개의 비통제 또는 무계획적인 인간행위는 여러 가지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산림의 감소, 토양 및 수질의 악화 그리고 사막화는 놀라운 규모가 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생활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수반되는 질병은 인류에게 비참한 상황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오존층의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산성비 등 대기변화, 해양 및 내수 오염, 유해물질의 부주의한 사용 및 처분 그리고 동식물 종의 절멸은 인간환경에 대해 일층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즉, 환경의 관리 및 평가의 필요성, 환경, 개발, 인구 및 자원의 밀접하고 복잡한 상호관계, 그리고 특히 도시에 있어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한 환경에 대한 압박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이 상호관계를 중시한 종합적이고 지역마다 통일된 방식에 따르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시킨다.

환경에 대한 위협은 낭비적인 소비형태 외에 빈곤에 의해서도 증대한다. 쌍방 모두 사람들에게 환경을 과도하게 이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3차 UN개발 10개년 계획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및 신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은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의 주요 수단중 하나이다. 시장기구와 계획기구를 연계시키는 것도 건전한 개발 및 환경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에

이바지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인종격리, 모든 형태의 차별, 식민지 그 외 형태의 외압 및 타국에 의한 지배가 없고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 및 군비를 위한 지적 자원 및 천연자원의 낭비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정세가 인간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대할 것이다.

환경 문제의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적당한 경우에는 국가간의 협의와 국제적인 협조 행동을 통해 모든 국가의 이익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협약이나 협정을 포함한 환경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술 연구 및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을 확충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적요인을 포함한 저개발 상태에서 기인하는 환경상의 결함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내 및 국가간의 기술적 경제적 자원의 일층 공평한 배분에 의해 대처할 수 있다. 선진국 및 환경과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국가는 해당 개발도상국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국내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천연자원의 보전과 양립하는 경제적 사회적 진보는 적당한 기술, 특히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적당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또 전통적인 목축방법을 근대화하기 위해 보다 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대체, 재활용 및 보전을 촉진할 때는 기술혁신의 역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 재래형 에너지원의 급속한 고갈은 에너지 및 환경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에 대해 새롭게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 또는 국가집단 사이에서 합리적인 에너지계획의 수립은 유익할 것이다. 신·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등 조치는 환경에 대해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회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예방조치 속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관계된 적당한 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홍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인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가 불가결하다. 이 분야에서는 비정부기구가 특히 중요하고 점차 계몽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생산방법 혹은 기술을 채용할 때 또는 이것들을 타국에 수출할 때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가 중요하다.

여러 국가로 구성된 세계 공동체는 환경보전 분야에서 국가적 노력 및 국제협력의 일층 강화 및 확대에 관한 약속과 똑같이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엄숙히 재확인한다. 세계 공동체는 또한 전지구적인 환경협력에 관련되는 중요한 촉매적인 기구로서의 UN환경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환경 기금을 통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증가시킬 것을 호소한다. 세계공동체는 우리들의 작은 혹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있는 생활을 만인에게 보증하는 상태에서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모든 정부 및 국민에 대해 집단적 개별적으로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한다.

<부록3>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년 6월 14일, 리우 데 자네이로)

전 문

유엔환경개발회의가 1992년 6월 3일-14일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음.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회의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추구하여 ;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원칙 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함.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함.

원칙 2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국의 관리구역 또한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음.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함.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됨.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환경과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함.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짐.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함.

원칙 8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야 함.

원칙 9

각 국가는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과학적 이해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용, 존속,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을 형성, 강화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원칙 10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짐.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유해물질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각 국가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함. 피해의 구제와 배상 등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원칙 11

각 국가는 효과적인 환경법칙을 규정하여야 함. 환경기준, 관리목적,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확이 반영되어야 함. 어느 한 국가에서 채택된 기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부적당하거나 지나치게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원칙 12

각 국가는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함.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됨. 수입국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함.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원칙 13

각 국가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환경위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야 함. 각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자국의 관리범위 이외 지역에 초래한 악영향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

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함.

원칙 14

각 국가는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다른 국가로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원칙 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함.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악화를 지양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원칙 16

국가 당국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함.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국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함.

원칙 18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급격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를 상대방 국가에 즉시 통고해야 함. 국제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원칙 19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시기적절한 사전 통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협의하여야 함.

원칙 20

여성은 환경관리 및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원칙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결집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원칙 22

토착민과 그들의 사회, 그리고 기타의 지역사회는 그들의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각 국가는 그들의 존재와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적절히 지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원칙 23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함.

원칙 24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함. 따라서 각 국가는 무력분쟁시 환경의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

원칙 25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원칙 26

국가는 그들의 환경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원칙 27

각 국가와 국민들은 이 선언에 구현된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국제법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고 동반자적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함.

<부록4>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정치선언문)

2002.9.녹색서울시민위원회 번역
2002.10.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1차 수정

인류의 시초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1. 전세계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는 2002년 9월 2일~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우리는 인종·나이·성별 구분 없이 모든 인류의 존엄성에 부응하는 인간적이고도 평등하며 온정 넘치는 국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3. 정상 회의 대표들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은 미래가 그들의 것이라는 점을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어조로 밝혔다.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빈곤, 환경의 황폐화 및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4.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대변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온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이 곳에서 공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5. 이에 따라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증추가 되는 영역-경제 개발, 사회 개발, 환경 보호-의 상호 연계 고리를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방의 차원은 물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6. 소위 "인류애의 요람"이라고도 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이행계획과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인간 외의 나머지 생명체에 대해서도 좀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7. 현재 인류가 갈림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빈곤 퇴치와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이의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자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스톡홀름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요하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8. 30년 전 스톡홀름에서 우리는 환경의 황폐화에 관한 즉각적인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0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UN 환경개발회의의 자리에서 우리는 리우 원칙에 입각한 환경보호와 사회적·경제적 개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의제21과 리우 선언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계획을 채택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을 재차 확인하였다. 리우 회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9. 이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세계 각국이 UN의 주도하에 여러 주요 회의에 회동하여 인류애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몬테레이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ment)와 도하각료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또한 글로벌 차원의 합의와 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 발전적인 양상을 보여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11. 우리는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및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위한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12. 우리 사회를 富者와 貧者로 양분하는 사회적 경계선과 선·후진국간의 점차 커지는 간격은 글로벌 차원의 번영, 안보 및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 현재 지구 전체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사막화로 인해 더욱 많은 땅이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기·수질 및 해양 오염에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후진국에서는 수 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14. 세계화는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다. 시장의 발빠른 통합, 전세계 자본 및 투자의 유동적인 흐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공평하게도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선진국들에 치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 국가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5.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간극을 극복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와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마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

16. 우리는 우리 공동의 장점인 '다양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변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

17. 세계 연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종·장애·종교·언어·문화 및 전통의 차이와 상관없이 전세계 시민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인간 존엄성의 불가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 깨끗한 물·상하수도·주거지, 에너지, 건강, 식품 안전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한시 빨리 충족되고 생물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 및 파트너십에 관한 사안을 결정짓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안들과 관련하여 상호간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 공평한 재정적 지원,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및 개발을 위한 핵심적 현대 기술의 보편적 사용 추구, 기술 이전의 장려, 저개발 극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교육 및 트레이닝의 실시 등.

19. 우리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세계 악조건과 싸우는 데에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와 같은 악조건은 만성적인 기근, 영양부실, 식민지(foreign occupation), 군사 충돌, 불법적인 마약 복용, 계획적 범죄, 부패, 자연 재해,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인신 매매, 테러, 인종종교 및 기타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외국인혐오증, 풍토병 및 HIV/AIDS, 말라리아결핵과 같은 각종 전염 가능 질병 등을 포함한다.

20. 우리는 여성 해방과 성평등의 논의가 의제21, 새천년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 우리는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국제 사회가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2. 이와 관련된 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여지껏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온 선진국들에게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ODA 지원 수위를 준수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3.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이 더욱 강화된 지역 협의회 및 연맹의 출현으로 지역간 협력,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 우리는 諸島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최빈국의 개발 요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5.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토착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하고자 한다.

26.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및 의사 결정 과정과 이행 과정 등의 모든 수위에서 광범한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국제 사회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각 major group의 상호간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7.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도 공평한 공동체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28. 우리는 또한 구직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직장 내 근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을 지지한다.

29.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기업 책무성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의 환경 효과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와 규제가 필요하다.

30. 우리는 의제21, 새천년발전목표와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수위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선을 촉구한다.

다자주의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31.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국제 및 다자주의 기관이 필요하다.

32. 우리는 UN헌장과 국제법원칙 및 목표를 달성하고 다자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표 기관으로서 UN의 리더십을 지지한다.

33.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한다.

실천하기!

34.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모든 major group 들과 각국 정부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35. 우리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보편적인 세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매개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36.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회·경제 및 환경의 제 목표들을 속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7. “인류애의 요람”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전세계 시민들과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미래세대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 공동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진지하게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들과 정부 당국에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치르는 주최국으로서 베푼 친절과 훌륭한 사전 조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